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8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8월 18일

3. 제안이유

IMF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재정구조개혁 차원에서 “지방자치단체 관사정비”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도단위 관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관사 관리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현행 관사사용 대상 공무원을 도지사, 부지사, 실국원장등 소속공무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함(안 제50조)
- 현재 관사의 구분은 1급관사 : 도지사관사, 2급관사 : 부지사관사, 3급관사 : 3급이상 공무원관사, 4급관사 : 1급내지 3급 이외의 관사로 구분하던 것을
- 4급관사를 폐지하고, 1급관사 : 도지사관사, 2급관사 : 부지사관사, 3급관사 :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로 변경 정비하고자 함(안 제51조)

- 기존에 우리도가 부담하던 1급내지 3급관사에 관한 보일러 운영비를 1급내지 2급으로 변경코자 함(안 제56조 3호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IMF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관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 현행 3급이상 공무원 관사로 구분된 3급관사를 시설관리사와 기타 필요한 관사로 변경 하고 4급관사는 폐지하였으며
- 도가 부담하던 1급내지 3급관사에 관한 보일러 운영비를 1급내지 2급으로 하여 관서운영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부
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